

문서번호	세무2과-1497
결재일자	2015. 1. 22.
공개여부	대시인공개
방침번호	부구청장 방침 제36호

★ ◎

더불어사는공공기관리안.성동

지방소득세2팀장	세무2과장	기획재정국장	부구청장	
안이미	박재순	김종순	01/22 이비오	
협조				

2015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,

주민세 감면 종료에 따른 과세 안내 및 홍보계획

2015. 1.



기획재정국
(세무2과)

사전 검토 사항

∴ 해당사항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항 목	검 토 여 부
사 업 구 분	신규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약(약속)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계속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인센티브/공모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
소 통 분 야 고 려 사 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구 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전 문 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이해당사자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기 타 고 려 사 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 자리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영향 <input type="checkbox"/> 안 전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지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바른 공공언어 <input type="checkbox"/> 성 인 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약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장 애 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디 자 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갈등발생 요인 <input type="checkbox"/>
타자원 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 앙 부 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서 울 시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기 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민 간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언 론 홍 보 계 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획보도 <input type="checkbox"/> 보도자료 <input type="checkbox"/> SDTV <input type="checkbox"/> 성동뉴스레터 <input type="checkbox"/> 성동구소식지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기 고 문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행정서비스 <input type="checkbox"/> S N S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리플릿 등)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 음 <input type="checkbox"/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홍 보 제 목 : “2015년부터 주민세의 주민부담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주민세 감면 종료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학병원, 새마을금고, 공공기관, 어린이집·유치원 운영자 등 미취약계층이거나 감면목적이 달성된 사업자에 대해 2015년부터 주민세 과세로 전환 중점 홍보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(감면 종료에 따른 과세전환) 및 감면기간 비연장 취지 - 감면 종료 분야 및 세목별 대상자(2014년 비교) - 감면 종료(과세전환)에 따른 세목별 신고납부 기간, 세율, 방법 안내 - 감면 종료에 따른 세입증기분의 소중한 사용 약속

2015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,

주민세 감면 종료에 따른 과세 안내 및 홍보계획

2015.1.1일자로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미취약계층이거나 감면목적이 달성된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아, 과세로 전환된 납세자에 대하여 **감면종료 취지와 납세방법 안내**로 납세자의 알권리와 세무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므로 **조세저항을 줄이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**하고자 함

1 추진 배경

-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
 - 주민세의 주민부담의 대원칙하 취약계층외의 대상에 대해 주민세 감면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2015.1.1일자로 시행
- 주민세 전액감면 대상자의 과세전환에 따른 조세저항 예상
 - 어린이집 등 다수의 전액 감면 대상자가 전액 과세전환됨에 조세저항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안내 필요

2 추진 개요

- 추진기간 : 2015. 1. 15. ~ 7. 31.
- 대상사업장 : 대학병원, 산학협력단, 신협·농협·새마을금고, 한국철도공사, 어린이집·유치원 등 250여명
- 대상세목 :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
- 최초도래 세목 및 납기일 : 주민세 종업원분 및 2015.2.10.(화)

- 감면종료에 따른 예상세입 : 149사업장 173건 552백만원
- 감면대상 세목 과세개요
 - 주민세 재산분(시세) : 매년 7월 사업장 연면적 330㎡초과 사업자가 사업장 연면적에 대해 ㎡당 250원의 세율로 신고납부(연 1회)
 - 주민세 종업원분(시세) : 매월 10일 근로자 50인초과 사업자가 과세급여에 대해 0.5%의 세율로 신고납부(월 1회)
- 중점홍보내용
 -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취지 및 시행일
 - 감면분야(대상)별 감면 축소 상세 내용(2014년 대비)
 - 과세전환에 따른 세목별 신고방법, 세액, 납부기간 등 자세한 납세방법
- 주요홍보방법
 - 납세자 대상 주민세 감면 종료에 따른 과세 안내문 발송(2회 실시)
 - 동별 납세상담 담당자 지정 및 전화상담소 운영(~7.31까지 운영)

3 세부 추진 일정

일 정	추진 내용
1.15. ~ 1.20.	감면종료 대상자 현황 수집 (인허가자료, 주민세 신고자료, 재산세등 감면자료 등)
1.19 ~ 1.21.	감면종료에 따른 과세홍보 계획 수립 및 안내문 확정
1.26. ~ 7.31.	주민세 감면종료에 따른 납세상담소 설치 및 운영
1.26.	1차 안내문 발송
7.10.	2차 안내문 발송

4 지특법 주요개정내용 및 세입분석

□ 주요 개정 내용

감면분야	변경전	변경후	성동구 해당 사업장
농어업분야	감면 50%	과세(감면종료)	단위조합 농·축·수협 3개
사회복지분야	감면 100%	과세(감면종료)	어린이집 195개 사립유치원 21개
의료기관분야	감면 100%	과세(감면종료)	한양대학교병원 1개,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개
교육과학기술분야	감면 100%	과세(감면종료)	한양대산학협력단 1개 한양여대산학협력단 1개
수송교통분야	감면 25%	과세(감면종료)	한국철도공사 4개
공공행정분야	감면 50%	과세(감면종료)	신탁 6개 새마을금고 25개

□ 감면종료에 따른 예상세입(시세)

(단위 : 건, 백만원)

사업장	총 계		재산분		종업원분	
	건	금액	건	금액	건	금액
총 계	173	552	149	39	24	513
산학협력단	14	35	2	6	12	29
대학병원	14	486	2	17	12	484
철도공사	4	2	4	2	-	-
농협신탁새마을금고	12	1	12	1	-	-
어린이집,유치원	129	13	129	13	-	-

5 기대효과

- 세무전문지식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한 충분하고 자세한 안내를 통해 세무행정 신뢰 제고 및 조세저항 감소
-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종료 대상자에 대한 세원누락 방지로 세입확충에 기여

- 붙 임 : 1. 주민세(재산분, 종업원분) 감면 종료에 따른 과세안내문 1부.
2. 동별 주민세 납세상담 담당자 현황 1부. 끝.

주민세 감면종료에 따른 과세안내

안녕하십니까!

먼저,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, 2015년도 지방세 감면분야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감면종료로 과세전환된 대상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.

2015.1.1일자 시행예정으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취약계층이 아니거나 감면목적이 달성된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세의 주민부담의 원칙하 감면기한을 재연장하지 않아 많은 분야의 주민세가 **2014.12.31일자로 감면종료**되어,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.

예시

감면분야	근거조항	변경전	변경후	해당 사업장(예시)
농어업	법14조	감면 50%	과세(감면종료)	단위조합 농축수협
사회복지	법19조	감면 100%	과세(감면종료)	어린이집, 사립유치원
의료기관	법41,37조	감면 100%	과세(감면종료)	한양대학교병원, 서울대학교치과병원
교육과학기술	법42조	감면 100%	과세(감면종료)	한양대한양여대산학협력단
수송교통	법63조	감면 25%	과세(감면종료)	한국철도공사
공공행정	법87조	감면 50%	과세(감면종료)	신협, 새마을금고

- ◆ 주민세(종업원분) - 종업원 **50인 초과** 사업소(50인 이하의 경우 면세점)
⇒ 급여지급 다음 달 10까지 납세자가 주민세(급여총액의 0.5%) **신고납부**
- ◆ 주민세(재산분) - 연면적 **330제곱미터 초과** 사업소(330㎡ 이하의 경우 면세점)
⇒ 2015년 7월말까지 납세자가 주민세(연면적 1㎡당 250원) **신고납부**
- ※ 주민세(종업원분, 재산분)의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될 경우 20%의 무신고가산세 및 1일 1만분의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한경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에 성동구청 또는 ETAX시스템 (<http://etax.seoul.go.kr>)을 통하여 신고납부 하시기 바랍니다.

그 외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세무2과 지방소득세2팀(☎02-2286-6520~6524)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2015. 1. .

성 동 구 청 장

<붙임 2>

☐ 동별 주민세 감면관련 납세상담 담당자

담당동	상담기간		연락처
	1.26. ~ 2.1.	2.2. ~ 7.31.	
총괄	지방소득세2팀장	좌동	6520
마장동, 사근동, 행당동	장희선주무관	신규	6524
옥수동, 성수동1가	장희선주무관	좌동	6521
상왕십리동~도선동, 응봉동, 금호동, 용답동	박현미주무관	좌동	6522
성수동2가, 송정동	양진영주무관	좌동	6523